

2000年度
主要業務計劃

水 産 課

I. 基本現況

□ 機構 및 定.現員

| 팀 별 | 구분 | 합계 | 직 급 별 | | | | | | 기능직 | 비 고 |
|---------|----|----|-------|----|----|----|----|----|-----|-----|
| | | | 소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계 | 정원 | 19 | 15 | 1 | 3 | 5 | 6 | | 4 | |
| | 현원 | 19 | 15 | 1 | 3 | 6 | 5 | | 4 | |
| 수 산 행 정 | 현원 | 6 | 6 | 1 | 1 | 2 | 2 | | | |
| 어 업 생 산 | 현원 | 4 | 4 | | 1 | 2 | 1 | | | |
| 연 안 관 리 | 현원 | 9 | 5 | | 1 | 2 | 2 | | 4 | |

□ 分掌事務表

| 팀 명 | 주 요 업 무 |
|---------|---|
| 수 산 행 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내 소관 업무의 기획, 예산 서무 업무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 마을, 정치망어업 면허 및 관리 ○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관계 업무 ○ 어항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 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 ○ 어업인 교육 ○ 수산물 수출, 가공 및 유통업무 |

| 팀 명 | 주 요 업 무 |
|------|---|
| 어업생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개발 ○ 수산양식사업 ○ 해상종묘 생산어업 ○ 패류독소 예방지도 ○ 내수면 어업 ○ 양식어장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 적조피해예방 대책 및 추진 |
| 연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 어업지도선 관리 ○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 ○ 불법어업자 전업지도 ○ 연안통합관리 ○ 공유수면 관리 등 ○ 해양오염방지 및 피해보상 업무 ○ 청정해역관리 및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 폐유 및 간이소각로 설치사업 ○ 해양오염 감시 감독 등 |

□ 委員會 現況

○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수산과장외 13명
- 임 무 : 수산관계 법령에 의한 정책 심의 및 건의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9,90,91조, 동시행령 제68조,69조

□ 水産 關聯 團體 現況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사 무 실 | |
|-------------------|-------------------|-------------|----------------|--------------------|----------|
| | 주 소 | 성 명 (한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통영수산기술 관리소고성분실 | 고성 고성 무학 315-2 | 실 장 李泰浩 | 550404-1840917 | 고성 고성 송학 451-2 | 674-7200 |
| 고성군수산업 협동조합 | 고성 하일 용태 668 | 조합장 梁基玉 | 330110-1914414 | 고성 고성 서외 1-6 | 674-4162 |
| 어업인후계자 협의회 | 고성 삼산 두포 216 | 회 장 朴太勳 | 590525-1914213 | 고성 고성 송학 451-2 | 674-4031 |
| 고성군굴양식 협의회 | 고성 삼산 병산 367 | 회 장 徐正碩 | 480515-1914312 | 고성 고성 성내 202-3 | 674-3709 |
| 자란만굴양식 협의회 | 통영 인평 8938 | 회 장 崔正明 | 440215-1836711 | 고성 고성 동외 345-33 | 674-2011 |
| 정치망어업 협의회 | 고성 삼산 병산 68-1 | 회 장 鄭永萬 | 351119-1914327 | 고성 고성 성내 200-1 | 673-7180 |
| 고성군형망 협의회 | 고성 동해 양촌 577-1 | 회 장 黃月植 | 540206-1915418 | 고성 동해 양촌 620 | 672-5559 |

□ 一般現況

| 구 분 | 단위 | 본 군 | | | | 본 도 | 대비(%) |
|-----------|-----------------|------------|-------|-----|-----|--------|-------|
| 연 안 읍 면 | | 1읍 7면 | | | | | |
| 수 산 가 구 | 호 | 2,246 | | | | 16,533 | 13.5 |
| 수 산 인 구 | 명 | 8,277 | | | | 55,857 | 14.8 |
| 어 선 | 계 | 척 | 1,653 | | | 20,934 | 7.9 |
| | 동 력 | “ | 1,540 | | | 18,051 | 8.5 |
| | 무 동 력 | “ | 113 | | | 2,883 | 3.9 |
| 해 안 선 | km | 187 | | | | 2,024 | 9.2 |
| 어 촌 계 | 개 | 22 | | | | 366 | 6 |
| 어 항 | 개소 | 어 항 구 분 | | | | 563 | 11.7 |
| | | 계 | 제1종 | 제2종 | 소규모 | | |
| | | 66 | 1 | 4 | 61 | | |
| 도 서 | 개 | 23(유인 : 2) | | | | | |
| 어 가 소 득 | 천원 | 18,515 | | | | 18,863 | 98 |
| 청 정 해 역 | ha | 4,872 | | | | 15,862 | 30.7 |
| 수산자원보전지구 | km ² | 217 | | | | 1,659 | 13.0 |
| 수 산 물 생 산 | 천톤 | 49 | | | | 458 | 10.6 |

□ 漁業免許 및 申告

○ 면 허 -----310건(5,133ha)

○ 허 가 -----2,303건

○ 신 고 ----- 17건

— 면 허 내 용

| 구 분 | 양 식 어 업 | | | | | | | 마 을 어 업 | 정 치 어 업 |
|--------|---------|-----|-----|----|------|------|-----|------------|------------|
| | 소계 | 굴 | 피조개 | 홍합 | 우렁쟁이 | 어류축양 | 기타 | | |
| 건 수 | 250 | 133 | 74 | 4 | 1 | 7 | 31 | 27 | 33 |
| 면적(ha) | 2,004 | 946 | 875 | 17 | 3 | 22 | 141 | 2,902 | 227 |

— 허가종류 및 건수

| 구 분 | 어선어업 | | 종 묘 생 산 | | 구 획 어 업 | 육 상 양 식 | 수 산 물 가 공 (냉동,냉장) |
|-----|------|-------|-----------|------------|---------|---------|----------------------|
| | 근 해 | 연 안 | 굴 | 피 조 개 | | | |
| 건 수 | 21 | 2,020 | 57(171ha) | 148(645ha) | 45 | 17 | 12 |

□ 漁業人後繼者 및 專業漁家 育成

- 후 계 자 : 182명(2,857백만원)

- 전업어가 : 27명(1,378백만원)

○ 연도별 후계자 육성

(단위 : 명)

| 구 분 | 계 | 81~85 | 86~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
| 선 정 | 222 | 33 | 55 | 3 | 25 | 24 | 17 | 11 | 13 | 21 | 10 | 10 |
| 취 소 | 40 | 15 | 18 | - | 5 | 1 | - | - | - | 1 | - | - |
| 현인원 | 182 | 18 | 37 | 3 | 20 | 23 | 17 | 11 | 13 | 20 | 10 | 10 |

○ 전업어가 육성 및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
| 인 원 | 27 | 2 | 2 | 2 | 5 | 4 | 6 | 4 | 2 |
| 금 액 | 1,378 | 100 | 100 | 100 | 250 | 200 | 300 | 200 | 128 |

□ 官公船 現況

| 구 분 | 선 질 | 톤 수 | 기관 마 력 | 속 력 | 비 고 |
|---------|-----|-------|--------|------|-------|
| 경남239호 | FRP | 21.00 | 1,300 | 24노트 | 어업지도선 |
| 경남209호 | " | 0.75 | 70 | 22노트 | 어업지도선 |
| 경남 906호 | 강선 | 4.50 | 43.5 | 4노트 | 청 소 선 |

□ 水産民願 接受 및 處理狀況

○ 수산민원 접수건수 : 3,445건

※ 우리군 총민원접수 건수(7,775건)의 44%

(’99. 12말 현재)

| 민원서류 명칭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처리율(%) |
|-------------------------|-------|-------|--------|
| 계 | 3,445 | 3,445 | 100 |
| 어업허가, 폐지 | 1,053 | 1,053 | |
| 어선등록, 변경, 말소 | 529 | 529 | |
| 어선 건, 개조 | 96 | 96 | |
| 어업면허 | 20 | 20 | |
| 어업권원부등본 | 1,194 | 1,194 | |
| 어선원부등본 | 243 | 243 | |
| 어업권이전, 인가 | 53 | 53 | |
| 어업권등록 | 140 | 140 | |
| 양식물 채취, 어장 청소신고 및 기타 | 117 | 117 | |

II. 2000 主要業務 推進計劃

□. 재원별 내역

○ 총사업비 : 7,677,900천원 (100%)

국 비 : 4,387,820천원 (57%)

도 비 : 1,811,954천원 (24%)

군 비 : 1,078,726천원 (14%)

응 자 : 285,800천원 (4%)

자 담 : 113,600천원 (1%)

□. 사업별 내용(13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 1,310,000천원
(2개 어촌계)

○ 기반시설 및 소득증대사업(6개 사업) ----- 5,971,400천원
(육지소규모 및 2종항개발,노후어선대체,특별어장관리,
수출패류양식장개발,굴패각처리)

○ 시책사업(6개사업) ----- 396,500천원
(후계자및전업어가육성,지도선관리,어업인교육,적조방제,전업자금지원)

□. 事業別 細部推進 内容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 |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용자 | 자담 |
| 계 | 13개사업 | 9 7,677. | 82 4,387. | 954 1,811. | 726 1,078. | 8 285. | 6 113. |
| 어촌종합개발사업 | 2개어촌계 | 1,310 | 655 | 5 589. | 5 30. | | 35 |
| 육지소규모어항개발 | 5개소 | 700 | 100 | 250 | 350 | | |
| 제2종항(포교항)개발 | 1개소 | 700 | | 700 | | | |
|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 2,000ha | 4,000 | 3,200 | 240 | 560 | | |
| 적조방제 및 황토살포 | 3,000톤 | 45 | 5 22. | 75 6. | 75 15. | | |
| 수출패류양식어장개발 | 5ha | 125 | 50 | | | | 75 |
| 굴폐각처리사업 | 14,280톤 | 4 428. | 72 342. | 704 25. | 976 59. | | |
| 노후어선대체사업 | 1척 | 18 | 6 3. | | | 8 10. | 6 3. |
| 어업지도선 운영 | 2척 | 69 | 14 | | 55 | | |
| 어업인후계자 육성 | 6명 | 125 | | | | 125 | |
| 전업어가 육성 | 2명 | 100 | | | | 100 | |
| 어업질서확립전업자금 | 5명 | 50 | | | | 50 | |
| 어업인교육 | 2,246명 | 5 7. | | | 5 7 | | |

漁 村 綜 合 開 發 事 業

낙후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코자 함.

□ 現 況

- 총사업비 : 1,310백만원(국 655 도 589.5 자 65.5)
- 대상어촌계 : 2개 어촌계(동해면 장산어촌계, 회화면 당항어촌계)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어촌계명 | 사업명 | 사 업 비(천원) | | | | | 비 고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자 담 | |
| 계 | 6개소 | 1,310 | 655 | 589.5 | 30.5 | 35 | |
| 장산 | 기반시설 | 610 | 305 | 274.5 | 30.5 | | |
| 당항 | 기반시설 | 700 | 350 | 315 | - | 35 | |

- 장산어촌계 : 기본계획에 의거 당초 활어횃집 및 숙박시설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기반시설 추진 지시에 따라 어항 시설에 집중투자(5개소정도, 개소당 1- 2억원)코자 어촌계와 협의중에 있음
- 당항어촌계 : 기본계획에 의거 수산물직매장,해상체험어장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어촌계 여건상 동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어업기반 시설(선착장,물량장시설)제2종어항내로서 동사업 지침에 불가하도록 되어있어 어촌계 실정에 맞는 다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陸地小規模漁港修築事業

우리군은 61개소의 소규모어항이 있으며 태풍으로 인한 어선대피 시설 부족 및 어획물 양육, 집안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키 위해 년차별 개발 계획을 수립 지원투자 함으로써 이업인 재산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 推進計劃

- 사업량 : 5개소(선착장 4개소, 물량장 1개소)
- 사업비 : 700백만원(국 100 도 250 군 350)
- 사업내역

| 위 치 | 항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백만원) | | | | 비 고 | |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 |
| 계 | | 5개소 | 700 | 100 | 250 | 350 | | |
| 삼산 | 삼봉 | 하촌항 | 선착장L=20m | 100 | 50 | | 50 | |
| 삼산 | 두포 | 군령포 | 물량장 400m' | 100 | | 50 | 50 | |
| 하일 | 용태 | 가룡항 | 선착장L=30m | 200 | | 100 | 100 | |
| “ | “ | 대구막항 | 선착장L=10m | 100 | 50 | | 50 | |
| 거류 | 신용 | 하원항 | 선착장L=10m | 200 | | 100 | 100 | |

□ 問題點

당초예산에 국·도비는 확보 되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조기 발주 지연 예상

特別管理漁場 淨化 事業

적조다발 등 오염우심 및 어장밀집해역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만(灣)단위 일괄 어장정화 실시로 해역환경 개선,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진해만 해역 어장 특별관리 지정 공고 '98.8.24 경남 제217호)

□ 사업개요

- 위 치 : 고성군 동해면 류면 연안 (진해만 해역)
- 사업량 : 2,000ha(양식 13건 16ha, 해상양로 148건 645ha, 공동어면 1,194ha)
- 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 80%, 도비 : 6%, 군비 : 14%)
※ 군비 560백만원 중 100억만원을 2000년 당초 예산에 미 확보
- 사업내용 : 해저 오염물 정양, 정운, 객트 어장 재배치

□ 추진계획 (사업준비년도 : 2000년, 사업시행년도 : 2001년)

- 기초자료조사 및 사업 기획 계획 수립 : 2000년 2월
-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사업 시행 예비 작업 : 2000. 3월 ~ 2000년 12월
- 사업시행 계획 공고 및 사업 착수 : 2001년 1월

□ 문제점

진해만 해역내에는 241건(2,334ha)의 어장이 있고 어업인 수(1,121여명)가 많아 사업시행에 따른 적기 시설물 철거가 어려운 실정임

□ 대책

2000년을 사업 준비년도로 하여 사전에 대어린 홍보 및 지도로 이상 시설물 완전 철거후 2001년에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연안어장 환경개선, 정확트 어업피해 예방
- 어장정리, 정비, 재배치로 어업 생산성 증대
- 지역어업인 참여로 연안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漁業人教育

국내.외 여건변화의 능동적인 대처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한기를 이용, 어업신기술 정보제공등 어업인교육을 실시 어가소득 증대 도모

□ 推進計劃

- 교육주관 : 군(수산과)
- 교육기간 : 2000. 2월~3월중
- 대상인원 : 7개 연안읍면(22개 어촌계) — 어업인 2,246명
- 소요예산 : 7,500천원
- 협조 유관기관 : 통영수산기술관리소 고성분실, 고성군수협, 통영해양경찰서 육군제8358부대 2대대, 연안읍면
- 교육방법 : 연안읍면 또는 어촌계별 순회교육

□ 教育內容

- 정부 수산시책 추진 및 수산관계법규 해설
-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처방안
- 수산 증양식 기술 지도
-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 해양오염 예방 및 시책 홍보
- 수산업 민원 및 수협 업무 안내
- 유관기관 협조 및 당부사항

赤潮被害豫防 및 防除

매년 하절기에 유독성 적조가 광역화 및 장기간 발생, 어류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조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現 況

- 적조발생 시기 : 하절기 고수온 및 집중강우시(8월~9월)
- 적조다발 해역 : 고성, 자란만 해역(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면)
- 적조발생 해역내 어류양식 어업권 : 23건, 26.8Ha
- 사 업 비 : 45,00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推 進 計 劃

- 적조방제용 황토확보(3,000톤)
- 어업인 교육 및 홍보매체 활용 적조피해 예방 홍보실시
- 적조방제장비 시설물 점검 및 양식어류 입식현황 조사(23개소)
- 적조예찰 및 예보체제 구축
- 적조피해예방대책 협의회 개최
- 바지선 등을 이용한 방제작업 실시

□ 期 待 效 果

- 철저한 적조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적조피해 최소화

輸出貝類 養殖漁場 開發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수산 패류자원 개발 의지가 높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진주양식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現 況

- 진주조개 양식어장 건수, 면적 : 4건, 20.7Ha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125,000천원(도비 40 %, 자담 60 %)
- 지원단가 : 25,000천원/Ha당

推 進 計 劃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지도 및 선진기술 지원

期 待 效 果

고부가 가치의 양식어업 지원으로 어촌계의 공동소득원 개발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굴 貝殼處理 事業

양식굴의 부산물로 발생되어 연안에 야적·방치된 굴패각을 수거하여
폐화석 비료로 재활용함과 아울러 연안환경 오염을 예방코자 함

□ 現 況

- 굴양식어장 건수, 면적 : 133건, 945Ha
- 사 업 량 : 굴패각 14,280톤
- 사 업 비 : 428,400천원(국비 80 %, 도비 6 %, 군비 14 %)
- 지원단가 : 30천원/톤당

□ 推 進 計 劃

- 사업수행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야적·방치된 굴패각의 실태조사 실시
- 패각처리 대상지 선정
- 사업자 선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폐화석 비료 생산업체, 패각매립면허 취득자)

□ 期 待 效 果

- 연안에 야적·방치된 굴 패각을 수거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연안환경조성과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漁業秩序確立

한.중.일 어업협정등 변화하는 어업여건에 따라 근해어선들의 연안수역 침범조업등 어업질서의 문란이 예상되는 데,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쾌적한 어장환경을 유지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 現 況

- 어업지도선 및 인력
 - ° 어업지도선 : 2척(경남 239호, 209호)
 - ° 지도단속 공무원 : 5명
- 어업지도단속 대상
 - ° 어선수(어선어업자) 1,653척
 - ° 증양식 어업권수 : 310건
 - ° 정치성 어업건수 : 78건

□ 指導團束 方向

- 불법어업 예방지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불법어업자 각종 수혜사업 지원 차별화
- 상습 불법어업 용의자는 수시 면담 및 설득으로 불법어업 근절유도

□ 推進計劃

-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계획 수립 지속적 실시 — 연180일이상출동
- 불법어구 자진반납 독려 — 전업자 특혜부여(전업자금 지원)
- 고질,상습 불법어업자 엄중 처벌 — 사법 및 행정
- 고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海洋汚染防止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해지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깨끗한 바다살리기,출어선 쓰레기, 폐유 되가져오기등 바다환경 보전시책은 연안마을 주민과 유관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정착단계에는 다소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추진해 나아가고자 함.

□ 現 況

- 해 안 선 : 186.6km
- 청정해역 : 4,872ha(고성,자란만)
- 수산자원보전지구 : 217km(고성,자란만,진해만)
※ 어선(1,653척),어업권(310건5,133ha)어업인:22개어촌계 8,277명

□ 推 進 計 劃

- 바다살리기 날 지정 및 연안청소 실시 : 매월 음력 15일(한사리물때) 및 수시
- 간이소각로 시설 적극 활용 : 7개소
- 폐유저장시설 및 수거용기 적극 활용 : 8개소(면세유 공급과 연계)
- 공공근로사업 실시 : 해안청소 1일 50명(2000년 1단계 해안청소)
- 해양오염방지 시책 홍보
 - 동계어업인 교육시 22개 어촌계 순회교육
 - 유선방송, 소가야소식지 및 리동회보, 어촌계 마을 앰프방송 활용 홍보
 - 해양오염 심각성 및 연안청소 생활화.
 -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선상 쓰레기와 폐유 되가져 오기.

낚시 漁船 安全管理

- 여가를 즐기기 위한 레저 수요 급증으로 해상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미연방지

□ 現 況

- 낚시신고어선 : 23척
- 낚시어선 안전관리 공무원 : 1명(연안관리팀)
- 낚시어선 신고기준 : 구명동의등 안전설비 비치 및 보험가입등 안전조치 사항

□ 推 進 計 劃

- 낚시어선 안전점검 : 4회(매분기별 1회)
 -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등의 기준 적합여부
 -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준수 사항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운행
 - 정원초과 행위
- 법규 위반낚시어선 지속적 단속
 - 성수기 중점단속 실시
- 낚시 외래 낚시객 우리군 유치를 위한 홍보
 - 인터넷을 통한 감성돔,볼락,낚시지역 안내(자란도,만아섬,대구섬등)
 - 낚시 전문 월간잡지, 주간지,신문등을 통한 우리지역 낚시터 소개

沿岸統合管理

- 연안의 중요성 인식 -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연안관리법 시행('99. 8. 9일)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선택('98. 1)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연안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연안 거주 환경의 질 향상」 및 「연안 자원의 합리적 분배」 실현

□ 現 況

- 연 안 읍 면 : 1읍 7면(22개어촌계)
- 해 안 선 및 도 서 : 186.6Km, 23개(유인도서 : 2)
- 새로운 법률 제정시행 :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99. 8)
- 기존법률의 개정시행 :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99. 8)
 해양오염방지법(2000. 1)

□ 推 進 計 劃

- 연안정비사업 계획 반영 요구

(단위 : 백만원)

| 계 | | 어항개발 | | 호 안 | | 방조제 | | 기 타 | |
|-----|--------|------|--------|-----|-------|-----|-------|-----|-------|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건수 | 사업비 |
| 101 | 45,342 | 72 | 37,040 | 16 | 3,820 | 11 | 3,152 | 2 | 1,330 |

- 국토연구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사업 배분계획 용역(전국 78개 시군)
 - ° 총예산 확보 계획 : 1조 8천억 ~ 2조원
 - ° 연안 시군별 사업 배분 계획 (2000. 2 ~3월)
 - 시군 수산세력(어촌마을, 해안선길이, 어업피해등)에 따라 기본율 적용(50%)
 - 시군별 전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배분(50%)

□ 대 책

- 수립 고시된 연안정비 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군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 : 30,000천원 자체 확보)
-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조사, 연구

Ⅲ. '99 郡議會 行政事務監查 是正事項

하일면 송천리 지포항사업 임의변경 반발초래

□ 지적구분 : 시정

□ 시정요지 : 하일면 소재 지포항의 당초 계획은 호안 석축으로 승인되었으나 승인 및 변경보고도 없이 임의로 물량장으로 변경설계하여 준공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원인규명과 향후 대책 강구

□ 처리결과

- 지포항 호안공사는 '99년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 지구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호안공사와 중복됨으로써 어촌종합개발사업비 70,000천원으로서 호안 64m를 '99. 5. 22일 기히 준공을 하였습니다.
-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100,000천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착장옆 물량장사업을 해줄것을 송태어촌계 회의록을 첨부 건의되었으므로 당초 계획한 호안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서 이미 준공을 하였기 99년 사업비는 물량장으로 변경 시행코자 '99. 4. 26일 경남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 1,000m'를 '99. 9.13 준공 하였으며 현재 지포항을 근거로 하는 어업인이 생활에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착장 가로등 유명무실

□ 지적구분 : 시정

□ 시정요지 : 관내는 해안 10여곳에 정부지원사업비로 선착장위에 어선의 출입항 및 어업작업의 원활을 위해 가로등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전기의 인입이 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전기인입대책을 강구

□ 처리결과

○ 관내는 소규모어항이 61개소가 있으나 각 어항별로 시설된 선착장이 시설설계 당시 보안등이나 전기인입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며 야간 어업 활용에 불편 있어 우선 '99년 당초예산 군비 5,000천원을 확보하여 견적을 본 바 10개소가 설치(전기인입 및 수리등)가 가능하여 '99. 7. 9 착공 '99. 7. 19준공 전기직 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필한 후 자치행정과 민방위기동대에 관리 전환을 하였습니다.

□ 관리전환 실태

○ '99년 지원한 고성읍 1개소(3등), 삼산면 2개소(4등), 하일면 4개소(6등) 하이면 2개소(3등), 동해면 1개소(3등)는 120기동대에서 잘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 간이소각로 활용 미흡

지적구분 : 시정

시정요지 : 해양오염방지용 소각로에 대하여 전년도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하이면 덕명리 소재 공원구역내 소각로 내 폐부자 및 많은 잡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은 간이소각로활용이 미흡함으로 각 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소각등 해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조치)계획

○ 간이소각로 시설 현황

- 시설개소수 : 7개소(신평,삼봉,하이,동해,우두,봉암,신화어촌계)

○ 간이소각로 관리 담당자 지정현황('99. 12. 24일 지정)

| 읍 면 | 위 치 | 담당공무원 | | 어촌계담당자 | | 비 고 |
|-----|--------|-------|-----|--------|-----|-----|
| | | 직 | 성 명 | 소속어촌계 | 성 명 | |
| 계 | 7개소 | | | | | |
| 고 성 | 신월.신부 | 농업 7급 | 이병팔 | 신평어촌계 | 김석주 | |
| 삼 산 | 삼봉.하촌 | 기능 | 이을수 | 삼봉어촌계 | 정상돌 | |
| 하 이 | 하이.덕명 | 기능 | 고태동 | 하이어촌계 | 정형기 | |
| 동 해 | 양촌.법동 | 농업 7급 | 최성식 | 동해어촌계 | 김윤생 | |
| 동 해 | 장좌.우두포 | " | " | 우두어촌계 | 전정행 | |
| 동 해 | 봉암.입암 | " | " | 봉암어촌계 | 장명성 | |
| 거 류 | 신용.하원 | 행정 7급 | 곽은주 | 신화어촌계 | 박광길 | |

○ 앞으로 간이소각로 이용 활성화 방안

- 해안변에서 수거된 쓰레기(오폐물)는 종전 3~4일 소각하던 것을 전담 직원 및 어촌계 관리자로 하여금 1~2일만에 수시로 실시토록 하여 소각로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소각로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관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어자원 개발 미흡

□ 지적구분 : 시정

□ 시정요지 : 타시군(통영,거제,사천)등에는 새우조망허가를 받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고성군은 입지적 여건, 용역비, 어민의 자율출원등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서의 해양 어자원개발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대책을 강구 어민소득 향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조치)계획

-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이 규정에 의거 조업구역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조업구역을 명시하기 위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1-2년) 새우자원이 많고 타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는 자원보호령상에 조업 구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어업인이 요구를 한다고 하여 용역을 시행결과 부적지로 판단될 시는 많은 용역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근 시군은 고성군 해역과는 달리 조업구역이 방대하고 외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나 부산 여수간 항로 내쪽에 위치한 고성군 자란만은 양식 어업, 정치성어업, 기타 어선어업 등 다양한 어업(215건 1,758Ha)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어장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자란만 해역에서 바닥을 끄는 새우조망 어업을 할시 타 어업(특히 피조개양식)과 많은 피해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우리군 자란만 해역내 새우조망어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러한 해양 여건 속에서도 새우조망 어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전체어업인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모조선소 보관 청소선 관리 소홀

□ 지적구분 : 시정

□ 시정요지 : 고성군에서 바다청소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청소선을 운영하다가 사용의 불합리등 이유로 청소선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해 청소선을 동해면 소재 세모조선소에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선박자체가 녹이슬고 운항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변상책임이 있으나 계속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책강구(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기 바람)

□ 처리(조치) 계획

○ 청소선 현황

| 선 명 | 톤수 | 마력 | 선질 | 속 력 | 구입일 | 구입금액 | 사용기간 | 보관기간 |
|------------|-----|------|----|-----------|---------------|---------------|---------------------|-------------------|
| 경남 906호 | 4.5 | 43.5 | 강성 | 시속 4노트 | '92. 9. 15 | 천원 137,457 | '93 ~ '96. 1. 12 | '96. 1.13 ~ 현재 |

○ 청소선 운용(사용)상 문제점

- ° 철판 뚜껑이 얇고 선체가 가볍고 바다물에는 약하여 바다 청소의 효율이 낮음
- ° 청소선 운용 관리비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등 예산과다 소요
(연간 약 80,000천원 정도)

○ 앞으로 청소선 관리(처리) 방안

- ° 관련전문업체 또는 전문기술자의 정밀진단을 실시 한후
 - 사용 가능 판단시 :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내보관 및 외곽부 포장등 수리조치
 - 사업불가능 판단시 : 매각 계획을 수립 매각

판곡 패각 매립장 추진 미흡

□ 지적구분 : 시정

□ 시정요지 : 삼산면 판곡리 소재 굴패각 매립자는 1988년 2월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2001년 2월까지 연장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기존 굴패각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가 매립장내로 유출되어 바다로 흘러가는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본공사가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인가자에 촉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처리(조치) 계획

○ 추진현황

- 피면허자 : 고성읍 성내리 206-9 황경운
- 위치 :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지선 - 면적 : 119,677m²(36천평)
- 면허기간 : '88. 2. 4 ~ 2001. 2. 3(1회 연장기간 5년 포함)
- 사업진도 : 50%(매립조건 : 패각 93%, 토석 7%)

○ 이용실태

- 우리군 주양식 어업인 굴양식 부산물로 생산되는 패각의 수용(년2만3천톤정도)
- 사업자의 오랜 매립(12년간)으로 인한 재력 상실로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미흡

○ 앞으로의 관리방안

- 매립사업 수행의 정상화
 - 판곡 패각 매립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의 정상화를 촉구(3차례)
 - 매립면허의 연장시한(2001. 2. 3)이 도래됨에 따라 인근지역(통영.거제)의 패각반입 검토
 -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제3자의 인수방안을 사업자와 검토중
- 패각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문제
 - 인근지역 주민들이 매립장내 수면에서 바지락,가무락, 어류등을 포획 채취하고 있으므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외측 개방된 호안부를 폐쇄하여 바다와 단절할시는 매립장내 해수의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굴패각에 대하여는 차수시설, 침출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침출수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